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동차 공제조합 수익사업 근거 마련 〉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24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13124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자동차 공제조합 수익사업 근거 마련(안 제64조제1항제7호 신설)	2
※ 참고자료	7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221312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9. 19.
3. 회 부 일 : 2025. 9.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6개사가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이들 공제조합은 사업 범위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지속가능성 악화, 재정기반 악화 등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합원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사업여건 개선,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률상 열거된 사업 외에는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7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자동차 공제조합 수익사업 근거 마련(안 제64조제1항제7호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별 자동차 공제조합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공제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⑤ (생략)	제64조(공제사업)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u>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u> 8. ----- <u>제7호까지의</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서는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자동차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5개 업종의 자동차 공제조합이 운영 중임²⁾.

이 중 버스·법인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 공제조합은 각 소속 연합회³⁾의 부대사업 형태로 공제사업을 수행하며⁴⁾, 렌터카 공제조합은 현행법 제64조에 따라 단독 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 중임.

2024년말 기준 5개 자동차 공제조합의 총자산 규모는 약 1조 6천억원 규모이며, 가입대상 차량의 자동차 공제조합 가입률은 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는 90% 이상, 법인택시는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렌트카는 45% 수준임.

을 설립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 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3)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 조합과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 자동차 공제조합 일반현황 ('24.12월말) >

구 분	연합회 부대사업				독립법인
	법인택시	버 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설립일	'79.6.20	'81.12.24	'93.2.1	'97.12.24	'12.10.26
직원(명)	389	439	455	166	312
총자산(억원)	2,970	4,441	4,020	848	3,994
가입대수	63,067	39,782	153,387	39,765	555,811
(가입대상)	(83,469)	(43,277)	(164,354)	(40,020)	(1,247,994)
가입률(%)	75.6	91.9	93.3	99.4	44.5
경영관리	지부별 독립채산제*			전국채산제	

*독립채산제 : 시·도 지부별로 분담금(보험료), 공제금(보험금) 자체 결정

자료 : 국토교통부

현행법에서는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①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② 사고로 사업용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③ 운수종사자가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④ 공제조합 피고용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실 보상, 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와 조합원의 편의·복지 증진 사업, ⑥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⑦ 이상의 사업에 대한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⁵⁾, 그 외의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려움.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공제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 ⑤ (생략)

이에 개정안은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을 통해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일반적인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복지·후생 등 상호부조의 목적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동차 공제조합은 자동차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시민의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즉, 수익사업 병행 시 경영·투자 손실, 방만 경영 등 재무적 위험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익사업과 공제사업 간의 회계 분리, 감독·공시 강화, 위험관리 강화, 이해상충 방지, 금융 감독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자동차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이나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보증이나 회원 복지·후생사업 위주의 다른 공제조합과는 달리,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위해 「보험업법」상 자동차손해보험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무분별한 수익사업 방지를 위한 한계 설정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1

자동차 공제조합 현황(화물자동차 공제조합 포함)

- (인·허가 현황) 택시·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 시 배상을 위해 여객·화물법에 따라 6개 공제조합 설립·운영 중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의무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자동차 공제조합 일반현황 ('24.12월말) >

구 분	연합회 부대사업					독립법인
	택 시	화 물	버 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설립일	'79.6.20	'81.7.1	'81.12.24	'93.2.1	'97.12.24	'12.10.26
직원(명)	389	698	439	455	166	312
총자산(억원)	2,970	6,720	4,441	4,020	848	3,994
가입대수 (가입대상)	63,067 (83,469)	187,617 (205,844)	39,782 (43,277)	153,387 (164,354)	39,765 (40,020)	555,811 (1,247,994)
가입률(%)	75.6	91.1	91.9	93.3	99.4	44.5
경영관리	지부별 독립채산제				전국채산제	

- (경영건전성)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은 '24년말 기준 168.1% 수준(100% 이상 유지 필요)

< 자동차 공제조합 지급여력비율 ('24.12월말) >

(단위 : %, %p)

구 분	택시	화물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계
전 체	206.2	164.2	402.7	181.7	△199.7	119.8	168.1
전년比	21.7	8.2	△101.7	60.7	△40.5	6.5	1.3

- (재무현황) 자동차공제조합 '24년말 총자산은 2조 2,994억원 규모

< 자동차 공제조합 재무현황 ('24.12월말) >

(단위 : 억원)

구 분		택시	화물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계
'24년	총자산	2,970	6,720	4,441	4,020	848	3,994	22,994
	누적수지	49	△47	650	43	△888	△380	△572
전년 比	총자산	52	214	△111	475	13	153	796
	누적수지	85	△83	△251	235	△197	△10	△222

- '24년말 기준 운용자산 규모 1조 9,097억원 중 대부분인 1조 6,425억원(86.0%)을 현·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 중

* 공제조합의 주된 수익사업은 조합원대출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구성

< 자동차 공제조합 운용자산 현황 ('24.12월말) >

(단위 : 억원, %)

구 분		택시	화물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계
'24년	현예금	2,444	5,981	3,575	3,513	765	147	16,425
	대출금	71	4	-	100	-	562	737
	주식	-	31	-	-	-	-	31
	채권	-	1	-	-	-	730	731
	부동산	254	267	149	182	2	318	1,173
	계	2,769	6,284	3,724	3,795	768	1,757	19,097
운용 자산 구성 비	현예금	88.3	95.2	96.0	92.6	99.7	8.4	86.0
	대출금	2.6	0.1	0.0	2.6	0.0	32.0	3.9
	주식	-	0.5	-	-	-	-	0.2
	채권	-	0.0	-	-	-	41.5	3.8
	부동산	9.2	4.3	4.0	4.8	0.3	18.1	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내부의사결정 구조) 공제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여객법 §63, 화물법 §51조의4)

- 위원은 연합회장의 추천 인사를 **우리부가 승인**한 후, **연합회장이 위촉**(별도 법인인 렌터카는 공제 이사장이 위촉)
- 사업조합 **연합회장 및 시·도 이사장**(조합원은 1/2 미만), **공제 이사장, 외부위원**(전문가) 등 35인^{여객법} 또는 37인^{화물법}(독립법인은 25인) 이내로 구성

<운영위원회 개요(여객법 시행령 제27조, 화물법 시행령 제11조의4)>

- (운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인은 '외부위원',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원칙, 다만 공제약관·공제규정·내부 제규정 개폐 등은 출석위원 2/3 찬성
- (심의·의결 대상) 사업계획·운영·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

자료 : 국토교통부